합병 공정가액 시행령, 입법예고

합병가액 산정을 공정가액으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월 8일 공포되어 12월 9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행령과 증발공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1

공정가액 산정 원칙 명문화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명시합니다.

02

이사회 의견서 공시 의무

합병 목적·기대효과·가액 적정성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가 법률로 상향됩니다.

03

외부평가 의무 전면 확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 의무가 모든 합병 등으로 확대됩니다.

공포-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 2024.07.18 김현정 의원 등, 공정가액 산정·손해배상책임 명시 개정안 발의
- 2024.12.03 윤한홍 의원 등, 이사회 의견서 공시·외부평가 의무화 개정안 발의
- 2026.05.14 국회 정무위원회, 복수 의원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 의결
- 2026.08.20 국회 본회의 의결 (재석 227, 찬성 226)
- 2026.09.08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
- **2026.09.16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시 (예고기간 10.6까지)**
- 2026.12.09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예정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입법예고 종료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공포되고, 12월 9일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령에 담긴 내용

산정 방식 METHOD	이사회 결의일 전 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 산술평균 등 기존 산식을 삭제해 획일적 산식 적용 의무를 폐지합니다.
이사회 의견서 BOARD OPINION	합병 목적·기대효과·가액 적정성 등 의견서 기재 항목을 보완합니다.
외부평가 항목 VALUATION	가액 적정성 외에 평가방법 선택의 적정성,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 어려움 등으로 확대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 산정 절차를 정비합니다.

3개 시점

시가 산정 방식 변경

일률 산식의 주가 기준 시점 전부 삭제

이사회 결의일 전 1개월, 1주일, 최근일 종가

누가, 어떻게 적용받나

적용 대상 SCOPE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상장법인이 대상입니다.
계열사 합병 AFFILIATES	특수관계인 현황, 출자·채무보증 등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 보호 SHAREHOLDER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도 공정가액 기준에 연동됩니다.

4개 유형

공정가액이 적용되는 조직개편행위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자산 양수도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01
- 세부 산정 기준·의견서 기재 항목·외부평가 항목 등 실무 요건 파악, 필요시 의견 제출

02
-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 산정 체계 사전 구축

03
-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외부평가기관 선정·평가·공시 의무 이행 절차 마련
- 내부 절차와 관련 계약 체계를 시행일 전까지 정비

남은 쟁점

전문가들은 공정가액 체계 도입은 긍정적이나, 합병유지청구권 명문화 등 M&A 과정의 주주보호 후속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